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10. 2.(수)

내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시행**-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

-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 교육

- 법무부는 ‘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23. 12월 신설)
- (납부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 (납부금액) 각 단계별(1단계 당 100시간)로 10만원
 -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원가의 20%를 부담토록 함(1시간당 1,000원)
- (감면대상)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는 교육비용 면제, 교육 성실 참여자는 교육비용 50%감경(50,000원)

※ 감면대상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안) 참조

- (시행일자) 2025. 1. 1.

□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요

2.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제정(안)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책임자	과 장	김기락 (02-2110-4140)
		담당자	사무관	최민수 (02-2110-4146)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① 개요 및 법적 근거

-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사회통합교육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 (대상)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귀화, 국적판정, 국적회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 (기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가족센터, 민간 단체 등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24. 8월 기준 전국 335개)

③ 교육 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100시간)으로 구성

구분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④ 참여자 현황

- 2009년~2024. 8월까지 510,337명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함

(단위 : 명)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8.
인원	1,331	4,429	6,519	12,444	14,014	22,361	25,795	30,515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8,028	63,892

법무부 고시 제 2024 - 434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3.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4.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0.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재해(G-1-1), 질병·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출산 인도적 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나.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행일 : 2025. 1. 1.